



금융감독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사본수신

제목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

“이 행정지도는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금융당국은 이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 기관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우리원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T/F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향후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고, 회원사에도 동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행2016-11008
- － [지도목적]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 제고
-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16.11.7.부터 '17.11.7.까지(1년)
- － [담당자]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신경섭 선임검사역
- － [관련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기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관련 유의사항('15.12.1, 2015-021)」은 동 행정지도로 대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전문 1부. 끝.

※ 본 공문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행정지도(일련번호 : 행2016-11008)에 해당되며, 2017.11.07 까지 존속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행정지도의 원칙)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항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감독원장

수신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한국어신금융협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신용정보협회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11/07 11/07 전결 11/07
선임검사역 신경섭 부국장 장봉희 선임국장 최성일

합의자

시행 IT정보일-468 (2016.11.07.)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338 팩스번호 02-3145-7339 / / 공개